

#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5.3.12.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류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(6개월)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2학기(1년) 전에 논문 예비 공개발표를 해야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.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의 시험과목은 각각 4과목 이상으로 한다.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의 시험과목은 지도교수가 정한다.

②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불합격자는 다음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. 자격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이전 시험에 합격한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한다.

③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④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** 석·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시, 750점 이상 취득한 토익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거나 충남대 국제언어교육센터 토익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3.12.)

**제6조(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)**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(6개월), 박사학위과정 및

석·박사통합과정은 2학기(1년) 전에 논문 예비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.

**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**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까지 부논문을 국내전문학술지(등재)이상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한다.
2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①항을 충족함은 물론 최종논문심사 전까지 학위청구예정논문을 국내외전문학술지(등재)이상 1편 이상 투고하여야 하고, 1번이상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.

1.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한다.
2. 접수증 사본과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의류학과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석사학위과정은 최종논문심사 전까지 학위청구예정논문을 국내외전문학술지(등재)이상 1편 이상 투고를 완료해야 한다.

1. 주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공저인 경우만 인정한다.
2. 접수증 사본과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의류학과에 제출해야 한다.

**제8조(논문지도위원회)**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2학기(1년) 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공개발표 하기 전에 논문지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.

**제9조(예외)**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제8조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에 예외를 들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세칙의 개정)**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(2015. 3. 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